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69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불이익조치 절차가 종료되어 공익신고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를 방지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조치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

-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방치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권익위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 신청인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① ~ ③ (생략) <u><신설></u>	<u>조치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 <u>1.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u> <u>2.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제3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현행법 제15조¹⁾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²⁾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상 불이익조치 유형>

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 유형
가목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목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목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목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목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목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 유형
사목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목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목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그런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불이익조치 절차가 종료되면 공익 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조치 등 결정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신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불이익조치 절차의 진행을 일시중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이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³⁾⁴⁾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불이익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같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 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016년 3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

□ 개정안과 같이 불이익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고, 이는 공익신고의 위축 요인을 경감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체계를 일관되게 하여 적용 법률에 따른 법적 보호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보호와 신고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임.

□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절차 등 불이익조치의 진행을 일시중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